

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

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일

팔 룽 동 장 

요청 기관	제공 일자	법적 근거	제공 목적	개인정보 항목
경 상 남 도 아동보호전문기관	2020.5.11.	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, 제30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2항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의 3	아동학대신고 피해아동 지원	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
국 민 연 금 공 단 창 원 지 사	2020.5.11.	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, 제30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2항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109조의 3 및 별표2의 3	국민연금 급여결정 및 수급권 확인	대상자 전배우자의 제적등본
국 민 연 금 공 단 창 원 지 사	2020.5.12.	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, 제30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2항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109조의 3 및 별표2의 3	국민연금 급여결정 및 수급권 확인	혼인관계증명서
창원서부경찰서 형 사 과	2020.5.22.	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, 제30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2항 「형사소송법」 제199조 제2항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 제8조 제1항	변사사건 수사목적	대상자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부친의 제적등본
수원남부경찰서 형 사 과	2020.5.22.	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, 제30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2항 「형사소송법」 제199조 제2항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 제8조 제1항	절도사건 수사목적	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